

수신 : 국토교통부 장관

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6조의3제1항 관련 제4호 삭제 건의의 건

1. 관련 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안 취지

- 규칙 일부개정안 제6조의3제1항제4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내용을 넘어서서 관리비 등의 점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문제점

-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적정성을 확인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관리비 등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항목임.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6조의3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 점검내용이 아니므로 삭제가 필요함

4. 건의 안

-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4호 삭제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 삭제 >